

1920년대 중국어교육에 관한 연구

- 東亞日報, 朝鮮日報, 中央日報 기사를 중심으로 -

蘇恩希*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본론
 - 2.1 제1차 조선교육령과 중국어 교육
 - 2.2 제2차 조선교육령과 중국어 교육
 - 2.2.1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의 중국어교육
 - 2.2.2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중국어 교육
3.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일제가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할 당시, 東亞日報, 朝鮮日報, 中央日報가 1923년 10월부터 1932년 12월 민간에 보도한 언론자료¹⁾들에 대한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1923년 10월 22일 04면 조선일보, 1924년 5월 17일 03면 조선일보, 1928년 1월 22일 02면 조선일보, 1928년 6월 2일 04면 동아일보, 1930년 11월 20일 03면 동아일보, 1931년 1월 23일 01면 동아일보, 1931년 4월 16일 02면 동아일보, 1931년 5월 29일 02면 동아일보, 1931년 6월 9일 02면 동아일보, 1931년 6월 9일 27면 조선일보, 1931년 6월 18일 03면 동아일보, 1932년 3월 1일 03면 중앙일보, 1932년 3월 23일 06면 동아일보, 1932년 4월 17일 02면 중앙일보, 1932년 4월 18일 22면 조선일보, 1932년 5월 22일 04면 동아일보, 1932년 5월 26일 07면 동아일보, 1932년 5월 26일 22면 조선일보, 1932년 7월 16일 07면 동아일보, 1932년 9월 4일 07면 동아일보, 1932년 9월 8일 07면 동아일보, 1932년 11월 12일 04면 동아일보, 1932년 11월 16일 04면 동아일보, 1932년 12월 22일 02면 중앙일보

종합, 분석을 중심으로 1920년대 일제식민지시기 중국어 교육 실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황무지와 같은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관련 학계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제1차 조선교육령과 중국어 교육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크게 1911년, 1922년, 1938년, 1943년 네 차례에 걸쳐 제정, 공포된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것은 일제가 각 시기별 시대적 상황과 정책적 목표에 따라 식민지 교육정책을 펴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그 식민지 교육정책의 특징을 시기별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처음 일본은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²⁾을 제정. 공포하여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교육제도를 정비하여 그것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교육 정책은 결국 조선인 학생을 식민 통치에 순응하도록 만들고, 식민지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천황에게 충성하는 선량한 국민을 육성' 하는데 교육의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보통학교 교육기간은 4년간으로 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1차 조선교육령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고등보통학교에서 영어만을 隨意과목으로 두었을 뿐 중국어를 포함한 다른 외국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922년 2월3일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기 까지 일본의 조선에 대한 교육정책은 그 목적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사회적 능력을 갖춘 조선인을 짧은 시간에 가능한 많이 배출하는데 있었으며, 식민체제하에 주입식교육을 실천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할 수 있다.

2) <日本殖民地時期 중국어회화교재 《改正增補漢語獨學》(1911)에 나타난 일본의 대조선 교육정책 고찰>, 《中國文化研究》, p.364.

2.2 제2차 조선교육령과 중국어 교육

2.2.1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의 중국어교육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무단통치의 한계가 드러나자 일제는 더욱 欺騙的인 '文化政治' 정책을 실시했고, 그 근간을 이룬 교육정책이 바로 1922년 공포된 제2차 조선교육령이다. 일제는 「三一獨立運動」 원인이 朝鮮人の 獨立慾에 있다고 보고, 韓國人이라는 觀念을 消滅시키고, 反日感情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1922년 제2차 「朝鮮教育令」을 공포하여 同化主義教育을 실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즉 한민족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문화정치'라는 이름 아래 조선인에 대한 유화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렇듯 일본의 한민족 문화 말살정책과 소위 황국식민화 정책은 제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립의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 1922년 2월에 공포, 4월 부터 실시된 제2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조선교육령

● 朝鮮教育令

大正十一年二月

勅令第十九號

第一條 朝鮮於ケル教育ハ本令ニ依ル (朝鮮에 있어서의 教育은 本令에 의한다.)

第二條 國語ヲ常用スル者ノ普通教育ハ小學校令, 中學校令及高等女學校令ニ依ル但シ此等ノ勅令中文部大臣ノ職務ハ朝鮮總督之ヲ行フ

前項ノ場合ニ於テ朝鮮特殊ノ事情ニ依リ特例ヲ設ク必要ルモノニ付

3) <日本殖民地時期 중국어회화교재 《改正增補漢語獨學》(1911)에 나타난 일본의 대조선 교육정책 고찰>, 《中國文化研究》, pp.364-369.

テハ朝鮮總督別段ノ定ヲ爲スコトヲ得

(國語를 使用하는 者의 普通教育은 小學校令, 中學校令 및 高等女學校令에 의한다. 但 이들의 勅令中文部大臣의 職務는 朝鮮總督이 이를 行한다. 前項의 경우에 朝鮮特殊의 事情에 의하여 特例를 設定할 必要가 있는 것은 朝鮮總督이 別途의 規定을 할 수 있다.)

第三條 國語ヲ常用セサル者ニ普通教育ヲ爲ス學校ハ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及女子高等普通學校トス

(國語를 常用하지 않는 者에게 普通教育을 하는 學校는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및 女子高等普通學校로 한다.)

第四條 普通學校ハ兒童ノ身體ノ發達ニ留意シテ之ニ德育ヲ施シ生活ニ必須ナル普通ノ知識技能ヲ授ケ國民タルノ性格ヲ涵養シ國語ヲ習得セシムルコトヲ目的トス

(普通學校는 兒童의 身體의 發達에 留意하여 이에 德育을 實施하고 生活에 必須한 普通의 知識 및 技能을 授與하여 國民으로서의 性格을 涵養하고 國語를 習得 시킬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五條 普通學校ノ修業年限ハ六年トス但シ土地ノ情況ニ依リ五年又ハ四年ト爲スコトヲ得

普通學校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年齡六年以上ノ者トス

修業年限六年ノ普通學校ニ修業年限二年ノ高等科ヲ置ワコトヲ得

高等科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修業年限六年ノ普通學校ヲ卒業シタル者又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リ之ト同等以上ノ學力アリト認ナラレタル者トス

普通學校ニ補習科得ヲ置ワコトヲ得

補習科ノ修業年限及入學資格ニ關シテ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ル

(普通學校의 修業年限은 六年으로 한다. 但 土地의 情況에 따라 五年 또 는 四年으로 할 수 있다.

普通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年齡 六年 以上의 者로 한다.

修業年限 六年의 普通學校에 修業年限 二年의 高等科를 둘 수 있다.
高等科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修業年限 六年의 普通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와 同等 以上の 學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자로 한다.

普通學校에 補習科를 둘 수 있다.

補習科의 修業年限 및 入學資格에 관하여는 朝鮮總督이定하는 바에 의한다.)

第六條

高等普通學校ハ男生徒ノ身體ノ發達ニ留意シテ之ニ德育ヲ施シ生活ニ有用ナル普通ノ知識技能ヲ授ケ國民タルノ性格ヲ養成シ國語ニ熟達セシムルコトヲ目的トス

(高等普通學校는 男生徒의 身體의 發達에 留意하여 이에 德育을 實施하고 生活에 有用한 普通의 知識 및 技能을 授與하여 國民으로서의 性格을 養成하고 國語에 熟達시킬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七條

高等普通學校ノ修業年限ハ五年トス

高等普通學校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修業年限六年ノ普通 學校ヲ卒業シタル者又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リ之ト同等以上ノ學力アリト認メラレタル者トス

高等普通學校 補習科ヲ置ワコトヲ得

補習科ノ修業年限及入學資格ニ關シテ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ル

(高等普通學校의 修業年限은 五年으로 한다.

高等普通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修業年限 六年의 普通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와 同等 以上の 學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 한다.

高等普通學校에 補習科를 둘 수 있다.

補習科의 修業年限 및 入學資格에 관하여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第八條

女子高等普通學校ハ女生徒ノ身體ノ發達及婦德ノ涵養ニ留意シテ之ニ

德育ヲ施シ生活ニ有用ナル普通ノ知識技能ヲ授ケ國民タルノ性格ヲ養成シ國語ニ熟達セシムルコトヲ目的トス

(女子高等普通學校는 女生徒의 身體의 發達 및 婦德의 涵養에 留意하여 이에 德育을 배풀고 生活에 有用한 普通의 知識 및 技能을 授與하여 國民으로서의 性格을 養成하고 國語에 熟達시킬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九條 女子高等普通學校ノ修業年限ハ五年又ハ四年トス但シ土地ノ情況ニ依リ三年ト爲スコトヲ得

女子高等普通學校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修業年限六年ノ普通學校ヲ卒業シタル者又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リ之ト同等以上ノ學力アリト認メヲレタル者トス

修業年限三年ノ女子高等學校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普通學校高等科ヲ卒業シタル者又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リ之ト同等以上ノ學力アリト認メヲレタル者トス

女子高等普通學校ニ補習科ヲ置クコトヲ得補習科ノ修業年限及入學資格ニ關シテ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ル

(女子高等普通學校의 修業年限은 五年 또는 四年으로 한다. 但土地의 情況에 따라 三年으로 할 수 있다.

女子高等普通學校에 入學 할 수 있는 者는 修業年限 六年의 普通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와 同等 以上의 學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 한다.

修業年限은 三年으로 하며 女子高等學校에 入學할수 있는 者는 普通學校 高等科를 卒業한者 또는 朝鮮總督에서 定한바에 의거하여 同等以上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女子高等普通學校에는 補習科를 置하고, 補習科의 修業年限 及 入學資格에 關하여서는 朝鮮總가 규정한 바에 의한다.)

第十條 入學資格ニ關シテハ修業年限六年ノ普通學校ノ卒業者ハ尋常小學校卒業者,普通學校高等科ノ第一學年修了者及卒業者ハ各高等小學校第一學

年修了者及修業年限二年ノ高等小學校ノ卒業者,高等普通學校卒業者ハ中學校卒業者,女子高等普通學校卒業者ハ相當修業年限ノ高等女學校ノ卒業者ト看做ス

(入學資格에 관하여는 修業年限 六年의 普通學校의 卒業者는 尋常小學校 卒業者, 普通學校 高等科의 第一學年 修了者 및 卒業者는 各 高等小學校 第一學年 修了者 및 修業年限二年의 高等小學校의 卒業者, 高等普通學校 卒業者는 中學校 卒業者, 女子高等普通學校 卒業者는 相當의 修業年限의 高等女學校 卒業者로 看做한다.)

第十一條 實業教育ハ實業學校令ニ依ル但シ同令中文部大臣ノ職務ハ朝鮮總督之ヲ行フ
實業學校ノ設立及教科書ニ關シテ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ル
(實業教育은 實業學校令에 의한다. 但 同令 中 文部大臣의職務는 朝鮮總督이 이를 行한다.
實業學校의 設立 및 教科書에 관하여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第十二條 專門教育ハ專門學校令ニ, 大學教育及其ノ豫備教育ハ大學令ニ依ル但シ此等ノ勅令中文部大臣ノ職務ハ朝鮮總督之ヲ行フ
專門學校ノ設立及大學豫科ノ教員ノ資格ニ關シテ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ル
(專門教育은 專門學校令에, 大學教育 및 그豫備教育의 大學令에 의한다. 但 이들의 勅令中 文部大臣의 職務는 朝鮮總督이 이를 行한다.
專門學校의 設立 및 大學豫科의 教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朝鮮總督의 定하는 바에 의한다.)

第十三條 師範教育ヲ爲ス學校ハ師範學校トス
師範學校ハ特ニ德性ノ涵養ニカメ小學校教員タルヘキ者及
普通學校教員タルヘキ者ヲ養成スルコトヲ目的トス

(師範教育을 行하는 學校는 師範學校로 한다.

師範學校는 特히 德性의 涵養에 힘쓰고, 小學校敎員이될 者 및 普通學敎員다운 者를 養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十四條 師範學校ニ第一部及第二部ヲ置ク但シ特別ノ事情アル場合ニ於テハ第一部又ハ第二部ノミフ置クコトヲ得
第一部ニ於テハ小學校敎員タルヘキ者ヲ, 第二部ニ於テハ普通學校敎員タルヘキ者ヲ教育ス

(師範學校에 第一部 및 第二部를 둔다. 但 特別한 事情이있는 경우에는 第一部 또는 第二部 만들 수 있다.

第一部에서는 小學校 敎員다운 者를, 第二部에서는 普通學校 敎員다운 者를 教育한다.)

第十五條 師範學校ノ修業年限ハ六年トシ普通科五年, 演習科一年トス但シ女子ニ在リテハ修業年限ヲ五年トシ普通科ニ於テ一年ヲ短縮ス

(師範學校의 修業年限은 六年으로 하고 普通科는 五年, 演習科는 一年으로 한다. 但 女子에 있어서는 修業年限을 五年으로 하고, 普通科에서 一年을 短縮한다.)

第十六條 師範學校普通科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尋常小學校ヲ卒業シタル者又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リ之ト同等以上ノ學力アリト認メラレタル者トシ演習科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普通科ヲ修了シタル者, 中學校若ハ修業年限四年ノ高等女學校ヲ卒業シタル者又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リ之ト同等以上學力認者トス

(範學校 普通科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尋常小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同等以上의 學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 한다. 演習科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普通科를 修了한 者, 中學校 또는 修業年限 四年의 高等女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朝鮮總督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同等 以上의 學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 한다.)

- 第十七條 師範學校ニハ特別ノ事情アル場合ニ於テ特科ヲ置キ又ハ特科ノミヲ置クコトヲ得
第十四條ノ規定ハ前項ノ特科ニ付之ヲ準用ス
(範學校에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경우 特科를 두고 또 特科만을 둘 수도 있다. 第十四條의 規定은 前項의 特科에 이를 準用한다.)
- 第十八條 特科ノ修業年限ハ三年又ハ二年トス
特科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修業年限二年ノ高等小學校ヲ卒業シタル者又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リ之ト同等以上ノ學力アリト認メラレタル者トス
(特科의 修業年限은 三年 또는 二年으로 한다.
特科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修業年限 二年의 高等小學校를 卒業한 者, 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의해 이와 同等 以上의 學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 한다.)
- 第十九條 師範學校ニ研究科又ハ演習科ヲ置クコトヲ得但シ研究科ハ特科ノミヲ置ク師範學校ニ於テハ之ヲ置クコトヲ得스研究科及講習科ノ修業年限及入學資格ニ關シテ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ル
(師範學校에 研究科 또는 演習科를 둘 수 있다. 但研究科는 特科만을 두는 師範學校에서는 이를 둘 수 없다.
研究科 및 講習科의 修業年限 및 入學資格에 관하여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 第二十條 師範學校ニ附屬ノ小學校及普通學校ヲ置ク但シ第一部ノミヲ置ク師範學校ニハ附屬小學校, 第二部ノミヲ置ク師範學校ニハ附屬普通學校ノミヲ置クコトヲ得 特別ノ事情アル場合ニ於テハ公立小學校ヲ以テ附屬小學校ニ公立普通學校ヲ以テ附屬普通學校ニ代用スルコトヲ得
(師範學校에 附屬의 小學校 및 普通學校를 둔다. 但 第一部만을 두

는 師範學校에는 附屬小學校, 第二部만을 두는 師範學校에는 附屬普通學校만을 둘 수 있다. 特別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公立小學校로서 附屬小學校로, 公立普通學校로써 附屬普通學校로 代用할 수 있다.)

第二十一條 師範學校ハ官立又ハ公立トス公立師範學校ハ道地方費ニ限り之ヲ設立スルコトヲ得

(師範學校는 官立 또는 公立으로 한다. 公立師範學校는 道地方費에 限하여 이를 設立할 수 있다.)

第二十二條 特別ノ事情アル場合ニ於テハ官立ノ高等普通學校又ハ女子高等普通學校ニ師範學校ノ第二部演習科又ハ講習科ヲ附置スルコトヲ得第二十條

ノ規定ハ前項ノ高等普通學校及女子高等普通學校ニ付之ヲ準用ス
(特別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官立의 高等普通學校 또는 女子高等普通學校에 師範學校 第二部 演習科 또는 講習科를 附置할 수 있다. 第二十條의 規定은 前項의 高等普通學校 및 女子高等普通學校에 이를 準用한다.)

第二十三條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及師範學校ノ教科, 編制, 設備及修業科等ニ關シテ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ル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 및 師範學校의 教科, 編制, 備 및 修業科 등에 관하여는 朝鮮總督이 定하는 바에 의한다.)

第二十四條 公立又ハ科立ノ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及女子高等普通學校竝公立師範學校ノ設立及廢址ハ朝鮮總督ノ認可ヲ受クシ

(公立 또는 科立의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및 女子高等普通學校와 公立師範學校의 設立 및 廢址는 朝鮮總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二十五條 特別ノ事情アル場合ニ於テ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リ國語ヲ常用スル者ハ普通學校高等普通學校又ハ女子高普通學校ニ, 國語ヲ常用セリル者ハ小學校中學校又ハ高等女學校ニ入學スルコトヲ得

(特別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朝鮮總督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國語를 常用하는 者가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또는 女子高等普通學校에, 國語를 常用하지 못하는 者가 小學校, 中學校 또는 高等女學校에도 入學할 수 있다.)

第二十六條 本令ニ規定スルモノヲ除クノ外私立學校, 特殊ノ教育ヲ爲ス學校其ノ他ノ教育施設ニ關シテ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ル
(本令에 規定하는 것을 除外한 外的 私立學校, 特殊의 教育을 하는 學校其他의 教育施設에 관하여는 朝鮮總督의 定하는 바에 의한다.)

附 則 (부록)

- 第二十七條 本令施行ノ期日ハ朝鮮總督之ヲ定ム
(本令 施行의 期日은 朝鮮總督이 이를 定한다.)
- 第二十八條 明治四十四年勅令第二百二十九號朝鮮教育令之ヲ廢止ス
(明治 四十四年 勅令 第二百二十九號 朝鮮教育令은 이를 廢止한다.)
- 第二十九條 本令施行ノ際現ニ朝鮮ニ存スル小學校, 中學校, 高等女學校,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 實業專修學校簡易實業專修學校實業學校, 官立ノ專門學校及師範學校ハ各之ヲ本令ニ依リ設立タル小學校, 中學校, 高等女學校,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 實業學校, 專門學校及師範學校トス前項ノ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 實業學校及專門學校ハ現ニ在學スル生徒ニ付其ノ在學ノ間仍舊令ニ依ルコトヲ得
(本令施行에 있어 現在 朝鮮에 있는 小學校, 中學校, 高等女學校,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 實業專修學校, 簡易實業專修學校, 實業學校, 官立專門學校 및 師範學校는 各各 이를 本令에 의하여 設立한 小學校, 中學校, 高等女學校,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 實業學校, 專門學校 및 師範學校로 한다.)

前項의 高等普通學校, 女子高等普通學校, 實業學校 및 專門學校는 現在 在學하고 있는 生徒에 대하여 그 在學其間은 舊令에 의할 수 있다.)

第三十條 本令施行ノ際現ニ朝鮮ニ存スル高等普通學校ハ本令施行後二年ヲ限り仍舊令ニ依ル補習科ヲ存置スルコトヲ得
(本令 施行 現在, 朝鮮에 있는 高等普通學校는 本令 施行 後 二年에 限하여 舊令에 의한 補習科를 存置할 수 있다.)

第三十一條 令施行ノ際現ニ朝鮮ニ依スル官立ノ高等普通學校及女子高等普通學校ハ本令施行後高等普通學校ニ在リテハ四年, 女子高等普通學校ニ在リテハ三年ヲ限り仍舊令ニ依ル師 範科ヲ存置スルコトヲ得
(本令 施行 現在, 朝鮮에 있는 官立의 高等普通學校 및 女子高等普通學校는 本令 施行後, 高等普通學校에 있어서는 四年, 女子高等普通學校에 있어서는 三年에 限 하여 舊令에 의한 師範科를 存置할 수 있다.

第三十二條 本令施行ノ際現ニ朝鮮ニ存スル私立ノ專門學校ハ當分ノ内仍舊令ニ依り存續スルコトヲ得
(本令 施行 現在, 朝鮮에 있는 私立의 專門學校는 當分間 舊令에 의하여 存續할 수 있다.)

● 朝鮮教育令施行期日

大正十一年二月

總令第五號

朝鮮教育令은 大正十一年四月一日부터施行한다.

위의 제2차 조선교육령에 근거하면,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에 비하여 제 2차 조선교육령시기는 제도적으로 사범학교가 독립되고 대학이 설치되었으며 각 급 학교의 수학연한이 연장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교과과정을 표로 그리면 다음

과 같다.

〈표1〉 1910년대(제1차 조선교육령시기 1911~1921) 각 급 학교의 교과목⁷⁾

각 급 학교 명칭	교 과 목
보통학교 ⁴⁾ (제6조)	修身 國語(日本語) 朝鮮語及漢文 算術 理科 唱歌 體操 圖畫 手工 裁縫及手藝 農業初步 商業初步
고등보통학교 ⁵⁾ (제7조)	修身 國語(日本語) 朝鮮語及漢文 歷史 地理 數學 理科 農業及法制經濟習字 圖畫 手工 唱歌 體操 英語
고등보통학교 사범과(제8조)	修身 教育 國語(日本語) 朝鮮語及漢文 算術 理科 農業 省字 圖畫 手工 音樂 體操
여자고등보통학교 ⁶⁾ (제7조)	修身 國語(日本語) 朝鮮語及漢文 歷史 地理 算術 理科 家事 習字 圖畫 裁縫及手藝 音樂 體操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제8조)	修身 國語(日本語) 朝鮮語及漢文 歷史 地理 算術 理科 家事 習字 圖畫 裁縫及手藝 音樂 體操
농업학교	修身 國語(日本語) 朝鮮語及漢文 數學 理科 圖畫 農業 體操
상업학교	修身 國語(日本語) 朝鮮語及漢文 地理 數學 理科 圖畫 商業 體操
공업학교	修身 國語(日本語) 朝鮮語及漢文 數學 理科 圖畫 工業 體操

4) 보통학교 규칙 (明治 44,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00호) 참조

5) 고등보통학교 규칙 (明治 44,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01호) 참조

6)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 (明治 44, 1911년 10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02호) 참조

7) 朴熙寬, 《朝鮮現行 法規大全》, 京城: 修文書館, 明治44[1911] 第8篇 pp.12-32.

〈표2〉 1920년대 (제2차 조선교육령기1922~1938) 각 급 학교의 교과목

각 급 학교 명칭		교 과 목	
보통학교(6년제) ⁸⁾ (제7조)		修身 國語(日本語) 朝鮮語 算術 日本歷史 地理 理科 唱歌 體操 圖畫 手工 裁縫(女) 隨意科目: 農業, 商業, 漢文	
고등보통학교 ⁹⁾ (제7조)		修身 國語(日本語)及漢文 朝鮮語及漢文 外國語(英, 獨, 法) 歷史 地理 數學 博物 生理及化學 法制及經濟 實業 圖畫 唱歌 體操	
사범 학교 10)	남자	보통과 (제6조)	修身 教育 國語(日本語)及漢文 朝鮮語 또는 朝鮮語及漢文 英語 歷史地理 數學 博物 生理及化學 實業 圖畫 音樂 體操
		연습과 (제29조)	修身 教育 國語(日本語)及漢文 朝鮮語 또는 朝鮮語及漢文 歷史地理 數學 博物 生理及化學 手工 圖畫 音樂 體操
		특과 (제45조)	修身 教育 國語(日本語) 朝鮮語 또는 朝鮮語及漢文 歷史 地理 數學 理科 手工 圖畫 音樂 體操
	여자	보통과 (제7조)	修身 教育 國語(日本語) 朝鮮語 英語 歷史地理 數學 理科 家事 圖畫 手工 裁縫 音樂 體操
		연습과 (제30조)	修身 教育 國語(日本語)及漢文, 朝鮮語 또는 國語, 朝鮮語及漢文 歷史地理 數學 博物 生理及化學 家事 圖畫 手工 裁縫 音樂 體操
		특과 (제46조)	修身 教育 國語(日本語) 朝鮮語 또는 朝鮮語及漢文 歷史 地理 數學 理科及家事 手工 裁縫 圖畫 音樂 體操
여자고등보통학교 ¹¹⁾ (제7조)		修身 國語(日本語) 朝鮮語 外國語(英, 法) 歷史 地理 數學 理科 家事 圖畫 裁縫 音樂 體操	

〈표1〉와 〈표2〉¹²⁾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조선교육령에는 제 1차 조선교육령에 없었던 '외국어'를 설정하였으며 '외국어'에는 영어, 불어 또는 독어를 선택하여 필수과목으로 하였고,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교과목 중 외국어과목에 중국어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자고등보통학교에

8)보통학교 규정 (大正 11 1922년 2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 참조

9)고등보통학교 규정 (大正 11 1922년 2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6호) 참조

10)사범학교 규정 (大正 11 1922년 2월 23일 조선총독부령 제17호)참조

11)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 (大正 11 1922년 2월 17일 조선총독부령 제14호)참조

12) <1910년대, 1920년대 중국어 교재 연구-《官話 華語教範》(1915)、《無先生速修中國語自通》(1929)을 중심으로 > -남윤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11.

서는 외국어는 영어와 불어 중 선택하도록 하였고 隨意과목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조선교육령은 1929년 4월에 사범학교에 尋常科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취지로 하는 개정과 1933년 3월에 사범학교 수업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개정, 1935년 4월에 실업보습교육 강화를 취지로 하는 개정이 있었다.¹³⁾

이와 같은 제2차 조선교육령 일부 개정을 근거로 하여 각급 해당학교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수반하여 교육과정도 아울러 개정하였는데, 1932년 實業지중의 교육정책 규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고등보통학교 규정도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朝鮮總督府命 제 13호 제 7조에는 ‘외국어’ 교육 시에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국어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다.

“高等普通學校ノ學科目ハ修身、公民科、國語漢文、朝鮮語及漢文、外國語、歷史、地理、數學、理科、實業、圖畫、音樂、體操トス、外國語ハ英語、獨語、佛語又支那語トス”¹⁴⁾

위 개정내용은 1932년 1월 17일 02면 동아일보에 “中等學校規定改訂 總督府令 發表 外國語에 中國語 添加”라고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들에 근거하면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포된 후 교육령 시행기(1922-1938) 중 1920년대에는 관공립 교육기관에서는 중국어교육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1932년에 이르러 서야 실행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2사설 교육 기관에서의 중국어 교육

東亞日報, 朝鮮日報, 中央日報가 1923년 10월부터 1932년12월 민간에 보도한 언론자료만 종합, 분석하더라도 1920년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일제강점기에는 전

13) <《官話叢集》과 《支那語獨習》 비교를 통한 1920년대 중국어교육 연구>, 김민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p.9-10.

14) 高等普通學校 規程中 改正, 朝鮮總督府令 제13호, 1932년 1월 18일 공포, 4월 1일 시행, 朝鮮總督府令 官報 제 1506호, 1932년 1월 18일자.

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야학이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야학은 민중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실력을 양성케 함으로써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계몽운동의 한 형태로 야학에서 교수되는 교과목은 朝鮮語, 算術, 日語, 漢文, 英語, 法律, 中國語 등 이었다. 신문기사의 내용들을 종합,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¹⁵⁾

1. 중국어 야학을 개최·후원한 곳은 기독교청년회, 각 지방의 청년회, 조선교육협회, 신문사 지국, 지방의 유지(有志)등이며 강습 장소는 청년회관, 학교강당, 더 작게는 누구의 집에서도 이루어졌다.
2. 중국어 야학은 수도였던 경성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전국의 18곳 각 지역에서 설립·시행되었다. 특히 분포지역을 살펴보면 지금의 북한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3. 중국어 야학의 강사로는 중국인이든 조선인이든 중국어에 능통한 강사에게 중국어 야학을 맡겼다.
4.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들의 기사내용으로 보아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으며, 이러한 중국어 야학 개최에 관한 소식들은 신문기사로 꾸준히 접할 수 있었고, 민중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5. 보통은 입학자격을 두지 않았으나 어떤 곳은 연령제한이나 입학자격을 두기도 하였다.
6. 야학의 수업기간은 1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했으며, 일련의 과정을 마치면 졸업증서도 수여하였다.
7. 한 달 강습료는 보통 1원 정도였는데, 당시 1원은 지금의 만 원 정도의 가치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일제강점기중 1920년대에는 관공립학교에서는 중국어를 가르치지 않았으나 민중들과 애국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야학기관에서는 중국어 교육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 <《官話叢集》과 《支那語彙習》 비교를 통한 1920년대 중국어교육 연구>, 김민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pp.123-124.

한편 이 시기에 일제는 아시아대륙을 판도 안에 넣기 위하여 한국을 발판으로 삼아서 만주를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삼았으며, 대, 내외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 침략을 서두르고 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 내외 국제정세를 이미 예상하고 관가로의 진출을 얻기 위하여 직업적으로 중국어 학습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지리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중국과 우리나라는 교섭이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정형을 잘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배워야한다”고 역설하였다.¹⁶⁾ 다른 한 편으로는 항일 구국운동을 하기 위해 중국의 만주, 상해 등지로 간 반일애국지사들이 중국어 학습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1933년 이후 朝鮮總督府學務局의 學務課長으로 在職했던 大野謙一의 著書『朝鮮教育問題管見』(1936)에 잘 나타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大正元年(1912년)에서부터 大正15年(1926년)에 이르러서는 歐美는 물론이고 인접한 支那와 滿洲의 北京、上海、南京은 물론, 天津、靑島、濟南、奉天등 주요각지에 一個 또는 數個의 대학이 있어 이들 대학에서 배우는 朝鮮의 학생수가 적지않다”¹⁷⁾고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많은 조선의 학생들이 중국에 유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나오는 말

본 논문은 일제가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할 당시, 東亞日報, 朝鮮日報, 中央日報가 1923년 10월부터 1932년12월 민간에 보도한 언론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1920년대 일제식민지시기 중국어 교육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중 1920년대에는 관공립학교에서는 중국어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으나, 중국과의 잦은 무역으로 인해 중국어 실력을 양성하고자 했던

16) “우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지리 및 여러 가지 관계로 보았을 때 중국의 정형을 잘 알지 못하면 안 되므로 이에 한어의 필요성을 느껴” (조선일보 1929.08.02 석간 5면)

17) 鄭在哲, 《日帝의 對韓國民植民地教育政策史》, P.394 재인용

조선민중들과 애국지도자들의 의지에 의해 설립·운영된 사설 야학기관에서는 중국어 교육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공식적인 중국어 교육은 제2차 조선교육령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던 1932년에 이르러서야 고등보통학교에서 시행되었다.

《參考文獻》

- 김민경, <《官話叢集》과 《支那語獨習》 비교를 통한 1920년대 중국어교육 연구>
김민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남윤순, <1910년대, 1920년대 중국어 교재 연구-《官話 華語教範》(1915)、《無先生 速修中國語自通》(1929)을 중심으로 ->남윤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朴熙寬, 《朝鮮現行 法規大全》, 京城: 修文書館, 明治44, 1911.
- 소은희, 심영숙 <日本殖民地時期 중국어회화교재 《改正增補漢語獨學》에 나타난 일 본의 대조선 교육정책 고찰>, 《中國文化研究》第14輯. 中國文化研究學會 2009.6
- 鄭在哲, 《日帝의 對韓國民殖民地教育政策史》, 一志社, 1985.
- 東亞日報, 朝鮮日報, 中央日報 1923년 10월부터 1932년12월

《中文提要》

本論文綜合分析日本帝國主義于1922年2月公布第二次朝鮮教育令時期, 東亞日報、朝鮮日報、中央日報在1923年10月到1932年12月間報道的輿論資料, 考察20世紀20年代日本殖民地時期的漢語教育情況。

根據我們的研究, 20世紀20年代日帝強占時期, 雖然官公立學校還沒有實施漢語教育, 但是因為與中國的貿易頻繁, 想要培養漢語實力的朝鮮民衆和愛國志士們設立運營的非公的教育機關夜學里已經開始教授漢語。日帝強占時期, 第二次朝鮮教育修改教育課程後的1932年, 普通高等學校才開始實行漢語教育。

關鍵詞 : 20世紀20年代日帝強占時期, 輿論資料, 漢語教育情況

이 논문은 2010년 5월 11일에 접수되어 2010년 6월 1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06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